

보도자료

투표하는 발걸음
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제공일자 2024. 10. 2.

총3면

www.nec.go.kr

공보과 02)3294-1000 ~ 1006

10월 3일부터 10·16 재·보궐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일(목)부터 10·16 재·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.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(목)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(화)까지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다만,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,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·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.

■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

<인쇄물·시설물 이용>

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,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,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.

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. 또한,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 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가족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.

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·면·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.

<공개장소 연설·대담>

후보자와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

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확장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.

■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(言)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. 또한,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·너비·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인터넷·전자우편·문자메시지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.

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,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.

특히,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.

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,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붙임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부.

[붙임]

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

구 분		선 거 별		관련 조문
		교육감	기초단체장	
선거운동기구	선거사무소	○	○	§61
	선거연락소	○	○	
선거사무원	선거사무소	구시군수 (최소10인)	읍면동수 3배수+5인	§62
	선거연락소	읍면동수	읍면동수 3배수	
선 거 벽 보		○	○	§64
책자형선거공보		○	○	§65
선거공약서		○	○	§66
현 수 막		○	○	§67
어깨띠 등 소품		○	○	§68
신 문 광 고		○	×	§69
방 송 광 고		○	×	§70
후보자 등 방송연설	후 보 자	○	○	§71
	연 설 원	×	×	
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		○	○	§72
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		○	○	§73
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		○	○	§74
공개장소 연설·대담		○	○	§79
단체 초청 대담·토론회	후 보 자	○	○	§81
	대담· 토론자	사무소 또는 연락소마다 1인	×	
언론기관 초청 대담·토론회	후보자· 대담·토론자	○	○	§82
토론회 주관 대담·토론회		○	○	§82의2
인터넷 광고		○	○	§82의7
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(선박)		사무소·연락소마다 각5대5척	후보자마다 5대5척	§91
전화·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		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(言)·전화·문자메시지·인터넷홈 페이지·전자우편 등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(말·전화는 선거일 제외, 자동 동보통신 문자 및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은 예비후보자·후보자 만 가능)		§59